

최초 등록일	2024.06.04
최종 등록일	2024.06.04



정 보 공 개 서

20 . . .

[(주)하하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별첨3] 취급하는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의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의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하하컴퍼니의 “하하아이스365”)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하하아이스365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주)하하컴퍼니」

대표번호	1660-1580
대표이메일	kigaq@naver.com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제지하1층 제비125호(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https://hahaice365.modoo.at
팩스번호	0504-138-1580
가맹사업운영부서 전화번호	1660-1580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21.12.08	사업자등록일	2022.01.05
법인등록번호	134811-0659378	사업자등록번호	498-87-0241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호 / 이 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가 맹 본 부	(주)하하컴퍼니	이도연, 김원일	1660-1580
특수관계인 (임원)	이도연(공동대표이사) 김원일(공동대표이사) 김복수(감사)	영업표지	주 소
		하하아이스365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제지하1층 제비125호(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하하아이스365의 명칭 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명	상호	서비스표	BI
하하아이스365	하하아이스365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출원번호 4020240047396 (2024.03.14)	

* 본 서비스표는 출원 상태로 추후 등록될 예정입니다.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4,996	0	4,996	0	-4	-4
2022	83,640	77,973	5,666	440,488	1,683	670
2023	181,480	180,035	1,444	613,360	-1,771	-4,221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의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하하아이스 365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가. 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도연	공동대표이사	21.12.08~현재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	하하아이스365 업무총괄
	김원일	공동대표이사	21.12.08~현재		하하아이스365 업무총괄
	김복수	감사	21.12.08~현재		하하아이스365 감사

8.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3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하하아이스365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인)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출원 일자 (2024.03.14)	출원번호 4020240047396	주식회사 하하컴퍼니	본 서비스표는 현재 출원 상태로 추후 등록될 예정입니다.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하하아이스365’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하하아이스365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4년 예정입니다.

당사의 하하아이스365의 직영점 오픈일은 2022년 01월 05일입니다.

2. 하하아이스365의 연혁

하하아이스365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하하컴퍼니	하하아이스365	이도연, 김원일	2024년 시작 예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제지하1층 제비125호(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3. 하하아이스365의 업종

하하아이스365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하하아이스365	대분류
기타 도소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하하아이스365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하하아이스365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사업 미 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1	-	1	3	-	3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	-	1	2	-	2
강원				-	-	-	-	-	-
충북				-	-	-	1	-	1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하하아이스365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사업 미 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022						
2023						

6. 기타 가맹사업현황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당사의 하하아이스365 브랜드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하하아이스365 브랜드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현황


당사는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도의 당사의 하하아이스365와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단	내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천원/VAT미포함)	
광고		(비공개)	합계	8,136
	소계	8,136		
판촉		(비공개)		
	소계	-		

* 당사의 2023년도 해당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광고비 및 판촉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 합계액으로 기재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현재 당사는 예치 대상 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하하컴퍼니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천원) (VAT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4. 개점 점 교육비	없음	-	-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천원) (VAT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3. 양수 개점 교육비	없음	-	-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예치 대상 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 가입자)가 그 밖의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준면적: 33㎡/단위:천원/VAT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설비	협력업체 (미지정)	1,000	100	가맹 계약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간판	협력업체 (미지정)	3,000	-		
POS/키오스크	협력업체 (미지정)	3,500	-		
집기	협력업체 (미지정)	1,000	100		
기타물품	협력업체 (미지정)	2,000	200		
초도물품	협력업체 (협력업체)	8,000	800		
합계	-	18,500	1,200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3.3㎡당 200,000원(VAT포함)					

- ① 위 표의 면적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33㎡, 10평 기준)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CCTV,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총납입금액의 20%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총납입금액의 50%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총납입금액의 70%

*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하하아이스365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자.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천원/VAT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	일시불	계약 체결 시
중도금	기타 비용의 70%		공사 시작 시
잔금	기타 비용의 30%		오픈 5일전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VAT포함)또는 산정기준	지급 대상자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해당 사항 없음	가맹본부	당사는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후	수시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교육비	특별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관측 분담비	관측	공동 관측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관측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임. 그 밖의 관측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관측 활동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광고(브랜드 광고, 상품광고 등)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70%분담 원칙)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지연이자	금 전 지 급 의 무 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지금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 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간판교체, 인테리 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별첨2]참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VII-1참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해당없음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가가격을 넘는 대가(이하“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이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 후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및 양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하하아이스365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당사에게 있지 않는 이상 귀하의 부담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원형 또는 변형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귀하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4) 또한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상호 협의 하에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6)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원)		구분
		상한	하한	
-	-	-	-	-

* 당사는 2024년 가맹사업 예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 내역이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하하아이스365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가. 당사는 하하아이스36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나. 당사가 하하아이스36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다. 당사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협력업체로부터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하하아이스365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3]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 시정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권장가격은 **[별첨3]**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의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무인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점	하하아이스365	-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의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지도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만료 전 180~90일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통지 →가맹점사업자동의 →영업지역 변경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 등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하하아이스365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2년씩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요→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요→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요→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요→A)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요→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요→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요→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요→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경영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 명의로 경업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1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항~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8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1항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31조 4항 각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p>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3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 및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하하아이스365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하하아이스365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하하아이스365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무인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하하아이스365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24시간	연중무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심야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서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가맹점사업자 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 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거래처요구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되지 않고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거래처요구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품질요구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6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제7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8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1660-1580)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차 상담	-전화상담/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검토	14일 이상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1일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3일 이상	
도면 작성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 협의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14일 이상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일 이상	
교육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일 이상	

오픈	-오프닝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날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이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가맹점 현황 분석→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시→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하하아이스365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하하아이스365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합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3시간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약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수원	하하아이스365 원호매실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43, 310동 1층 103호(금곡동,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2	안성	하하아이스365 진사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39, 106호
3	청주	하하아이스365 청주용정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35, 1층 105호-1(용정동, 용정 한라비발디 2단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개월	187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비고
198,347	-

* 당사가 운영중인 직영점 중 6개월미만 운영한 직영점(진사점, 청주용정점)을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하여 6개월 이상 운영한 매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보공개서의 내용 문의>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660-15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s://hahaice365.modoo.at>]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취급하는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순번	품목	권장가격(단위 : 천원)
1	아이스크림(600)	0.6
2	아이스크림(800)	0.8
3	아이스크림(1200)	1.2
4	아이스크림(2000)	2.0
5	아이스크림(5500)	5.5
6	아이스크림(6000)	6.0
7	아이스크림(7000)	7.0

- * 당사의 영업표지 하하아이스365는 소매업으로, 취급하는 판매상품이 약 600여개에 해당하므로 권장가격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 * 상세한 상품 내역은 발주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